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법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

제 목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시행 관련 안내

1. 관련 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근로자안심출산지원팀-49(2016.12.27)

2. 2017.1.1.부터 시행되는 「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」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자 관리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○ 「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」

- (신청대상)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.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

* '17.1.1. 이전 출생아 중 36개월(3년) 미 도래의 경우도 적용

- (본인부담률) 외래진료시 종별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**10%** 적용

- (시행일자) 2017.1.1. 이후, 출생 후 36개월 까지

- (등록방법)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* 요양기관을 통한 등록은 '17.2.1.가능(요양기관 정보마당 이용)

※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Q&A 참고

붙임 1.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 관리 업무 Q&A 1부

2. 요양기관 정보마당 사용설명서 1부

3. 포스터 및 리플릿 각 1부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운학 국장 최금숙 본부장 박혜경

시 행 : 보험 제 2016-662 (2016.12.28)

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

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